

—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9월 18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9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9월 23일

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국가와 민주발전을 위해 공헌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
-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와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본인·배우자 또는 직계존·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·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

-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함(안 제2조 제2항)

라. 참고사항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7항
- 도 세정13400-11396(2003. 5.23) 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
- 도 세정13400-11655(2003. 6.19) 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행정자치부의 도, 시·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임.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도 기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임.
- 따라서,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예우 및 지원 차원에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